

해온누리 기자단 운영지침

제정 2018.12. 5.

개정 2020. 2.21.

개정 2021. 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해온누리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기자단은 일반기자와 명예기자로 구성한다.

제3조(선발 및 위촉) ① 일반기자는 대학(원)생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② 명예기자는 기자단 수료자 대상으로 제한공모 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③ 지원서의 허위 작성 또는 자유기사의 표절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선발된 자의 기자 위촉은 기획조정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⑤ 위촉기간은 모집공고 상 활동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4조(활동 및 의무) ① 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원 연구성과 및 행사 등 관련 콘텐츠 작성 및 제공

2.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고 싶은 해양수산 관련 정보 콘텐츠 작성 및 제공

3. 상기의 활동을 통해 홍보 또는 연구 아이디어 발굴 및 제공

4. SNS를 통한 홍보 활동

② 기자는 성과홍보실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콘텐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명예기자는 개발원 연구성과물에 대한 콘텐츠를 분기당 1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작성된 콘텐츠는 성과홍보실 검토 및 편집을 통해 개발원에서 지정하는 블로그에 기자 명의로 게시한다.

제5조(저작권) ① 기자는 저작권을 준수하여 콘텐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게시된 콘텐츠가 저작권에 위배될 경우 책임은 작성한 기자에게 있다.

③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개발원에 귀속된다.

제6조(해촉) ① 개발원은 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위배 또는 표절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기자단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4. 최종 게시월로부터 2개월 이내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는 등 활동이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기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촉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위촉된 기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원) ① 개발원은 기자에게 게재 실적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와 취재지원비 등 기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 위배 또는 표절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해 지급된 금원은 환수 조치한다.

② 개발원은 원활한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자에게 신분증 등을 제공하며, 실적이 우수한 기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을 마친 기자를 대상으로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